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18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9.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입사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98. 9.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강석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875호, 98. 8. 31)에 의거 지방의 회 전문위원의 경우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 단,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만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조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정수에 관한 사항들로서 정원조례시 다루었던 사항으로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인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875호, 98. 8. 31)에 의거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 단, 일반직 사무에 대해서만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조정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직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만 의회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3조(사무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원의 정수 및 그 직급별 정원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